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회의원 세비 지급과 국회 활동의 투명성,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회법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년 7월 27일

청 원 인

성 명 : 양 준 모

주 소 : 서울특별시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대표 발의자 :: 양 준 모 (인) 외 13 인

공동 발의자 :: 김도희, 조운식, 엄희창, 류창한, 서수진, 정예진, 권성민, 이호창, 정희재, 김수민, 김태언, 김진우, 박지효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명 : 양준모
건명	국회의원 세비 지급과 국회 활동의 투명성,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회법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2년 7월 27일

소개의견

청원인 양준모는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청소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는 2012년 7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하나가 『국회의원 세비 지급과 국회 활동의 투명성,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회법 법률 개정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세비와 여러 추가 수당들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국회의원의 업무 능력, 회의 참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 공개하여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법 제46조에 명시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각각 공직수행평가특별위원회, 공직수행평가자문위원회로 확대, 변경하여 국회의원 개인의 자격 심사 뿐만 아니라 회의 참가, 공약 이행 등과 같은 업무수행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맞게 연금, 세비, 추가 수당 등을 차등 지급의 기준을 결정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이 제안한 청원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국회의원 세비 지급과 국회 활동의 투명성,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회법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

1. 제안이유

이번 19대 국회 출범 당시 크게 화두에 오르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각 정당의 제안 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 혹은 축소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원활한 입법 활동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러한 특권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재산 규모로 미루어 봤을 때, 현재 진행되는 경제적 지원의 규모가 과다하게 크다고 생각되어 무리한 세금 지출을 줄여나가고 나아가 국회의원 활동의 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 주요골자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국회의원(진, 현직 포함)의 연금, 세비와 추가 수당 지원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어 국회의원 개인의 업무 능력(공약이행률, 회의참석률 등)을 평가하여 앞서 말한 지원금을 능력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공직수행평가특별위원회로 확대, 변경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음 법률을 명시된 사항과 같이 개정합니다.

국회법 제 46조 윤리특별위원회와 같은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6조 윤리특별위원회의 명칭을 공직수행평가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명칭 역시 공직수행평가자문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행	개정문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6조(공직수행평가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 <u>업무수행정도</u> 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u>공직수행평가특별위원회</u> 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u>공직수행평가특별위원회</u>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u>공직수행평가특별위원회</u> 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 46조의2에 따른 <u>공직수행평가자문위원회</u> 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공직수행평가특별위원회</u> 는 <u>공직수행평가자문위원회</u> 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제 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직수행평가자문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공직수행평가특별위원회의 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공직수행평가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2(공직수행평가자문위원회)

①의원의 징계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공직수행평가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직수행평가특별위원회에 공직수행평가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정당과 이해관계가 없는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이는 의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이로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인의 결정은 위원장이 판단한다.

④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정책평가원장이 역임하되, 한국정책평가원장이 거부할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의원 및 당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청원인 성명 : 양 준 모

청원인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 724-2 동구햇살@

청원인 전화번호 : 02-2654-8921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